

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가. 계약기간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나. 계약목적

- 1)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2)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다. 계약 당사자

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(치매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)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라. 서비스 제공시간

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계약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
마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1)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.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,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.
- 3)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.
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대상자는 0%, 의료대상자 6%, 감경대상자 6% 또는 9%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.
- 4)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(비급여)은 대상자(보호자)가 전부 부담한다.
 -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
 - ② 대상자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
 -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	공단부담금	85%(일반) 91%(감경) 94%(감경,의료) 100%(기초)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 중 85%~100%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.
본인 부담금	보험료 (개인부담금)	15%(일반)	보험공단이 85%이고 본인 부담금이 15%임
		9%(감경), 6%(감경,의료)	보험공단이 91%,94%이고 본인 부담금이 9%,6%임
		0%(수급자)	보험공단이 100%이고 본인 부담금이 0%임

- 5)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6)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.
- 7)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,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.
- 8)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① 월 본인한도액(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 급
한도액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

제공시간	30분 이상	60분 이상	90분 이상	120분 이상	150분 이상	180분 이상	210분 이상	240분 이상
수가	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※ 단, 야간 심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
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

목욕방법	차량내목욕	차량이용(가정내)	차량미이용
제공시간	60분이상	60분이상	60분이상
수가	88,990	80,230	50,100

- 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-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.
- 1) 서비스제공자 의무

① “대상자”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
- ② “대상자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
-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
-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
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⑧ 이용상담,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
-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2)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 -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 -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 -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-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: 부당요구 지양부탁
 -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: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 -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: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 -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
 -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-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(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)
 -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및 그 가족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 -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사. 계약의 해지

1) 계약해지 요건

- ①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 -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- 기타 대상자(또는 보호자)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: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.
 -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 -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2) 계약의 해지

- ①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.
-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(또는 보호자)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-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
-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,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.